

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3월 17일 김포시장
나. 회부일자 : 2004년 3월 23일
다. 상정일자 : 2004년 3월 23일
라. 의결일자 : 2004년 3월 24일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2003. 1. 1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,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운영되던 김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도 폐지되어 김포시도시계획조례와 연계한 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를 정하고자함.

나. 주요골자

-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제정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제45회 임시회에서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김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도 같이 폐지되어 그 동안 토지거래 등 각종 허가를 받고 불법행위(목적대로 미사용, 타인 매도 등)를 했을 경우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을 방지하는 등 행정의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넘어 동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사실은 부시간 업무 협조와 담당부서의 안이한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.
- 다음은 안 제2조 제1항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한도금액은 다른 시군의 조례와 비교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

4. 질의·답변요지 : 생략	5. 토론요지 : 생략	6. 심사결과 : <u>원안가결</u>	7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	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제작자 : 김민경 제작일자 : 2023.01.01 제작장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제작설명 : 제작설명은 생략되었습니다.	제작자 : 김민경 제작일자 : 2023.01.01 제작장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제작설명 : 제작설명은 생략되었습니다.	제작자 : 김민경 제작일자 : 2023.01.01 제작장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제작설명 : 제작설명은 생략되었습니다.	제작자 : 김민경 제작일자 : 2023.01.01 제작장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제작설명 : 제작설명은 생략되었습니다.	제작자 : 김민경 제작일자 : 2023.01.01 제작장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제작설명 : 제작설명은 생략되었습니다.

제작자 : 김민경
제작일자 : 2023.01.01
제작장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
제작설명 : 제작설명은 생략되었습니다.